

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993,019,254	329,790,578
일반회계		9,980,363,823	299,410,915
특별회계		1,012,655,431	30,379,663
기타특별회계		1,012,655,431	30,379,663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3,952,160	118,565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36,565,993	1,096,980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7,276,237	218,28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25,422,658	15,762,68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96,790	44,90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4,872,077	446,162
	소방특별회계	422,908,673	12,687,260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	160,843	4,82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9,269,40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12,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2022년도에 한하여 연도 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즉시 보고한다.